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 여건을 갖춘 폐기물의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의 범위에 합성수지재질의 완구류를 추가하고, 완구류에 대한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출 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킬로그램당 343원으로 정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발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산업용 필름 등 일정한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 대통령령 제359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제2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의 항목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신설 또는 변경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완구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제품. 다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가. 활동 완구 나. 미술공예 완구 다. 퍼즐 완구 라. 기능성 완구 마. 게임 완구 바. 승용 완구 사. 발사체 완구 아. 역할놀이 완구 자. 악기 완구 차. 운동 완구 카. 유아 완구 타. 블록 완구 파. 모형 완구 하. 자석 완구 거. 가구 완구 너. 교육용 완구 더. 조립 완구 러. 기타 완구
---------	--

별표 4 비고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1) 일반팩	kg당 288원
	2) 멸균팩	kg당 488원
	나. 유리병	kg당 52원
	다. 금속캔	
	1) 철캔	kg당 133원
	2) 알루미늄캔	kg당 183원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240원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1,130원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kg당 272원
	나) 단일재질 유색	kg당 359원
	다) 복합재질	kg당 551원
	4)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kg당 240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5) 운할유통기 포장재	kg당 417원
	6) 비료·사료 포장재	kg당 123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제품	7) 폴리프로필렌(PP) 마대	kg당 213원
	8)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정반용 용기	kg당 180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9)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715원
	10) 1)부터 9)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715원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가.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715원
	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kg당 240원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 [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kg당 715원
	가. 수은전지	g당 60.6원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나. 산화은전지	g당 37.7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997원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1.5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485원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3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타이어	kg당 45원
	운할유	ℓ당 25원

른 제품		
7. 제18조제7호에 따 른 제품	가. 형광등	개당 113원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kg 당 1,249원
	2) 직관형(直管形)	kg 당 943원
8. 제18조제8호에 따 른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무자	kg 당 719원
9. 제18조제9호에 따 른 제품	곤포(뭉치) 사일리지용 필름	kg 당 113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kg 당 96원
11.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	가. 산업용 필름	kg 당 428원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kg 당 424원
	다. 안전망	kg 당 314원
	라. 어망	kg 당 522원
	마. 로프	kg 당 476원
	바. 폴리에틸렌 관	kg 당 417원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kg 당 503원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kg 당 188원
	자. 파렛트	kg 당 417원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kg 당 417원
	카. 창틀·문틀	kg 당 407원
	타. 바닥재	kg 당 407원
	파. 건축용 단열재	kg 당 618원
	하. 전력·통신선	kg 당 598원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kg 당 431원
	너. 완구류	kg 당 343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기준비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다.